

알 법(法)한 이야기

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알 법한 이야기에서는 그 세 번째 이야기로
‘낙태생존아보호법^{Born-alive Abortion Survivors Protection Act}’을
소개합니다.



●임소망 미국 변호사



캐나다 앨버타 대학에서 클래식 음악 석사 학위를, 한동국제법률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현재 생명윤리법과 국제 인권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몇 개월 전, 뉴스에서 한 여성이 집에서 몰래 아기를 출산 한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는 쓰레기 더미에 신생아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 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있기 약 1년 전에는 어떤 여성이 두 번이나 자신이 낳은 아이를 출산 직후 살해해 유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분노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갓 태어난 신생아 또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건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신생아의 엄마가 자신이 낳은 아기가 장애를 가진 아기였기에 원치 않아서 방치, 유기한 거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게 합리적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양심이 있는 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장애나 병을 발견하여서 낙태를 한다면, 사람들의 의견은 갈라집

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태는 살인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낙태는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합니다. 경제적으로 키울 수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형편상 불가능하다면 낙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저자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위와 같은 논란은 출산을 기점으로 아기의 인간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출산 전의 아기와 출산 후의 아기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보고 그들의 생사를 엄마나 친족과 같은 다른 이들이 결정하게 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I. 낙태생존아보호법의 배경

현재 미국에서는 낙태를 출산 직전까지 허용 하자는 산모 중심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낙태수술의 실패로 인해 아기가 산 채로 태어났을 때 강제적으로 살려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명 중심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낙태생존아보호법(Born-alive Abortion Survivors Protection Act)’이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는 임신 후기에 있는 임산부라도 출산 직전까지 원한다면 낙태 할 수 있게 허락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출산하지 않는 한 언젠가 죽어도 합법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많은 미국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아직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버지니아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i. ‘낙태제한조항폐지법 The Repeal Act, HB2491’ vs ‘신생아 보호법 Born-Alive Infants Protection Act.’

버지니아주 민주당 캐시 트랜(Kathy Tran) 하원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소위원회 공청회에서 ‘낙태제한조항폐지법안’을 소개하면서 임신 후기 낙태를 제한하는 조항들을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들이 낙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조건들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 40주차까지도, 더 나아가 자궁이 열리기 시작했더라도 임산부가 원한다면 낙태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의 법안에 대해 버지니아의 주지사 랄프 노담(Ralph Northam)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법안은 매우 심각한 기형(seriously deformed)이 있거나 독자 생존할 수 없는(nonviable) 아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살아있는 아기들을 일단 ‘받을 것(delivered)’이고 나온 후엔 아기가 ‘편안하도록 돌볼 것(kept comfortable)’이지만 아기를 낳은 임산부와 가족의 결정에 따라 아기의 소생² (resuscitation)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며 “그 후에 의사와 아기 엄마와의 논의가 따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1 “Third Trimester” (임신 3분기): 24주이상부터 대략 40주 안팎으로 출산 전까지 시기. 보통 낙태 허용 임신 기간을 3분(分)하여 구분하는데, 1분기는 임신 시작부터 12주까지, 2분기는 12주부터 24주까지를 일컫음.

2 아기의 소생: 아기가 엄마의 태에서 나오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를 열어 숨을 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뜻함. [출처: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웹사이트]

했습니다. 곧, 엄마와 가족이 아기의 소생을 원치 않으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주지사 노답이 이러한 코멘트를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낙태 수술을 한다고 해서 모든 아기가 죽는 것이 아니었고, 어떤 경우 생명력이 강한 아기들 몇몇은 자신을 죽이려는 어른들의 손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아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실 갓난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인 ‘신생아보호법’을 지난 2002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낙태라는 살해 시도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아이들도 인권 상 한 ‘인간’으로 정의하고는 있지만, 자세하게 낙태에서 생존한 신생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과 노답 같은 급진적이고 비상식적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II. 낙태생존아보호법

i. 법안 내용

이러한 움직임 속에 끔찍한 낙태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삶을 얻은 낙태 생존자들에게 소생술을 행할 것을 강요하는 법안인 낙태생존아보호법이 생겨났습니다.

이 법은 의료 종사자들에게 낙태 시도 후 아기가 살아서 나온다면 어떠한 발달 단계에 있

든지 간에 동일한 발달 단계에 있는 다른 아기들과 똑같이 ‘합리적으로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대하고 아기를 병원에 즉각 입원시킬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를 어길 경우엔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든지 의도적 살인 및 살인 미수죄로 처벌을 받습니다.³ 낙태를 시도했다가 생존한 아기에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아기의 엄마 본인은 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며 징벌적 벌금, 손해 배상금 및 법정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렇듯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법을 통해 강요해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ii. 입법 진행 절차 및 현 상태

원래 2015년 블랙번 하원의원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 법안은 작년 2018년 1월 19일 H.R. 4712라는 이름으로 연방 하원을 통과한 후 바로 그 다음날 연방 상원에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결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3 낙태생존아보호법 원문: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130/text>

네브라스카주의 벤자민 사스 상원의원은 내용이 동일한 법안(S.130)을 2019년 1월 상원에 소개하면서 상원의원 전원에게 법안을 만장일치 통과시킬 것을 구했지만, 워싱턴주의 패티 머레이Patty Murray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대로 인해 만장일치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사스 상원의원은 S.130과 동일한 법안(S.311)을 하나 더 준비하여 듀얼 트랙으로 싸우는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월 25일 상원 토론종결투표⁴에서 법안 S.311은 찬성 53표 대 반대44표라는 결과를 얻었고 토론종결투표를 넘기려면 필요한 정족수 60표(3/5)를 얻지 못해 좌절 되었습니다.⁵ 현재 사스 의원은 나머지 S.130 법안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III. 결론

미국의회에 소개된 법안들은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마땅한 처사에 관한 법이었기에 사람들이 최근까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초가 되어서야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어머니의 여성 자기결정권에 따라 다소 몸이 불편해도 멸절한 생명을 죽일 수 있도록 낙태 범위를 넓힌 낙태제한조항폐지법의 소개와 함께 트랜 의원과 주지사 노담의 언짢은 말로

인하여 그 심각성을 입법자들이 더욱 실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낙태에서 생존한 아기의 소생을 엄마와 가족이 결정케 하자는 노담 주지사의 코멘트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으로서의 삶을 인정받지 못해서 낙태라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방지하여 죽이는 것이 합법이 된다면, 생명을 더욱 경시 여기게 될 것이며 결국 쓰레기 더미 속 아기와 같은 사건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만으로도 매우 소중합니다. 말 못하는 아기여도 말입니다. 그런 소중한 생명의 시작과 끝을 엄마와 친족 같은 ‘다른’ 사람이 결정 짓는다는 것은 아주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서도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낙태라는 이름으로, 또 자기 결정권이란 이름으로 경제적인 편익과 편리를 위해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신생아들의 살인 마저 법으로 허용 하는 세상을 만들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화인(火印)을 맞은 것처럼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한 현상은 세상을 혼돈으로 이끌어 갈 것 입니다.

4 토론종결(Cloture)투표란 법안이수 자체를 통과시키기 위한 투표를 하기 전에 법안에 대한 토론을 끝내도록 결정하는 투표이다. 찬성은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단계로 쟁점에 대한 투표를 하자는 의미이며, 반대는 토론을 더 연장하거나 의사 진행을 방해하겠다는 의미이다.

5 비록 투표에서 좌절 되어도 상원의원들은 다시 토론종결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FAMILY IS
THE BEST
GIFT

